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7-77호
2017. 10. 20.(금)

차 례

훈 령(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20호)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징계규정 전부개정규정(훈령 제421호)5

고 시(4)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7-201호)8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제2017-203호)9
- 도시계획시설사업(만남어린이공원 조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고시 제2017-204호) ...10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대화12호선) 실시계획 고시(고시 제2017-206호)12

공 고(7)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783호)14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784호)15
-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공고 제2017-788호)16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7-791호)18
-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채납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7-798호) ..19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내역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7-799호) ...20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802호)21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7-797호) ..22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2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의 규정을”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

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의 제명이 변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변경된 규정 제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제13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으로 변경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징계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2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징계규정 전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사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법령에 규정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조(준용규정)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2017. 4. 14.)됨에 따라 폐지된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규정은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함(제1조).
-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대덕구 인사위원회에서 관할 하도록 정함(제2조).
- 징계사유에 대해 정함(제3조).
-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정함(제4조).
- 징계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제5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 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신탄진동 295-51	남경마을로15번길 22-28	2017.10.20.	건축물신축	남경마을 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명 : 금강동일파트스위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동일스위트 대표 김은수

다. 시공자 : (주)동일 대표 김종각 외 1인

라. 사업시행 위치·면적 및 규모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73,7790m²

○ 연면적 : 255,012.3551m²

○ 건축면적 : 10,084.4419m²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43층, 아파트 12개동, 1,7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기간 : 2017. 11. ~ 2020. 12. (38개월)

바. 사업비 : 440,766,451천원

2. 다음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만남어린이공원 조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주민건의사업의 일환으로 편익·휴양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만남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74-1(만남어린이공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만남어린이공원 조성)
- 사업의 명칭 : 만남어린이공원 정자 설치사업

3. 사업의 규모

- 공원총면적 : 1,510.2m²

- 사업내용 : 팔각정자 1동 설치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만남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중리동 174-1	1,510.2	-	1,510.2	건교부 고시 제315호 (1984.08.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공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부조서

구,시	동,면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1,510.2	1,510.2					
대덕	중리	174-1	공원	1,510.2	1,510.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			

7.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 042-608-5134)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대화12호선) 실시계획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대화12호선) 「대화동 주민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35-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대화12호선)

나. 사업의 명칭 : 대화동 주민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도 로 명	사업내용	위 치		비고
			시 점	종 점	
도로	소로3-대화12호선	도로개설 L=110m, B=6.0m	대화동 40-80	대화동 235-23	일부 개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고시일 ~ 2017. 12. 31.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거나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공사 완료 후 해당 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

7. 관계도서 :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건설과에 비치)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64호	노후 하수관로 굴착개량	계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하수관	아스팔트 보도블럭	753.7	1,884.8
		신탄진로218번길 84 포함 21개소				753.7	1,884.8

2. 공사기간 : 2017.12.30.까지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65호	가스관 매설	계	대덕구청장	가스관 (LPG)	아스팔트	200.0	200.0
		용호동 44-2번지 일원				200.0	200.0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1. 대덕구 신탄진동 15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현재 개설된 도로 선형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선형 개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변경) 하는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가. 교통시설(도로)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신탄진1	8	국지도로	300	신탄진 150-8	신탄진 150-9	일반도로	-	대덕구고시 제2001-11호 (2001.3.2.)	
변경	소로	2	신탄진1	9~18	국지도로	300	신탄진 149-6	신탄진 150-9	일반도로	-		

2)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신탄진1	소로2-신탄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선형변경 기점명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선형과 실제 개설 구간이 상이함에 따라 현황대로 변경하고 신탄진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곡선반경 확보

②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③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대덕구 도시과 (별관4층)

④ 관계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과(☎042-608-510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7. 11. 02.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영업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2016-0242247)	한잔어때	김하연	대덕구 덕암로 233(덕암동)	사업자등록폐업 (2017.09.29.)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7.11.02예정)

5. 공고기간 : 2017. 10. 17~2017. 11. 01.(15일간)

6. 고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제7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02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대덕구청 청소위생과 ☎(042)608-6904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체납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내용: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체납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2017.10.20.~2017.11.3.(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미송달사유	납부금액	비고
김○태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162, 10*동 3**호(퇴계동, 퇴계현대1차아파트)	폐문부재	195,155,600원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부당금액

5. 공시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를 통보하오니 **2017.11.3.(금)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654-099192-17105 (대덕구청 의료기금(특)수입금출납원)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담당(☎042-608-6385)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내역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결과 귀 의료기관에 환수 결정된 의료급여내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내역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2017.10.20.~2017.11.3.(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미송달사유	환수결정금액	비고
백○일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로 ○, ○동 ○호 (관저동)	폐문부재	566,550원	재심분 의료급여비용

5. 공시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 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삭감액이 발생하여 차기 급여비용 지급 시 전산상계로 차감하여 환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환수내역 및 사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 통보한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 내역서” 에 수진자별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담당(☎042-608-6385)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 -66호	전선관 매설	계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전선관	아스팔트	1,148.0	1,426.2
		신탄진로756번안길, 대청로				1,148.0	1,426.2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소하천정비법」에서 정한 점용료 등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며, 법제처에서 발굴된 정비 대상 조례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규정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함(안 제1조).

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

다. 조례로 정한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7조).

라.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산정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 1조부터 안 제6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1.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전화 : 042-608-5253,

FAX : 042-608-3844, E-mail : franny1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담당자 이수진 (전화 : 042-608-52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의 규정”을 “제22조제5항”으로,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제3조제7항 및 제8조”로, “별표 1의 기준을”을 “비교표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제4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점용료등을”을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연도분”을 각각 “연도 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법 제2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을 “법 제18조”로, “의하여”

를 “따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점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p>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08.0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p> <p>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p> <p>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p>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사업 연액m²/sec당 200,000원</p> <p>나. 공업용수 소하천 (전기사업제외)은 아래율을 적용한다. 관경100m/m까지 월액100,000원 관경200m/m까지 월액120,000원 관경300m/m까지 월액160,000원 관경400m/m까지 월액220,000원 관경500m/m까지 월액280,000원</p>

구 분	산 정 기 준
	<p>관경600m/m까지 월액380,000원 관경700m/m까지 월액500,000원 관경800m/m까지 월액600,000원 ※관경801m/m이상은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m²당 200원씩 적용한다.</p> $\text{초당 인수량} = \frac{\text{관경}^2 \times \text{관내유속(통상 2m)}}{146^2 \times 60}$ <p>다. 농업용수 · 0.05-0.5m³/sec까지 연액 10,000원 · 0.5m³/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p>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호를 따른다.
6. 배수(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1/3</p> <p>나. 그 밖에 용수의 배수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제4호나목의 1/4</p> <p>※ 월 10,000m³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7. 토석(사력)의 채취	<p>가. 대전광역시외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 10/100</p> <p>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p>
8. 죽목, 갈재 목초 및 그 밖에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9.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 포함)	· 토지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50

구 분	산 정 기 준
	/10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0.5/100
11. 조선용 선가대 설치를 위한 점용 또는 사용	·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100
12.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	·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0.5/100
13. 그 밖의 점용료 및 사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0.5/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u>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22조제5항</u>----- ----- -----<u>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u>-----.</p>
<p>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생략)</p> <p>② 토지가격은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u>제9조제2항의 규정</u>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u>별표 1의 기준</u>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u>」 ----- ----- ----- -----<u>제3조제7항 및 제8조</u>----- ----- ----- -----<u>비교표</u>----- -----.</p>
<p>③ ~ ⑤ (생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소하천정비법</u>」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p>	<p>⑥ 「<u>소하천정비법</u>」 (이하 “<u>법</u>”이라 한다.) ----- ----- -----</p>

<p>로 한다.</p>	<p>-----.</p>
<p>제3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u>제2조의 규정</u>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점용료등_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조 (점용료 등의 조정) ① ----- ----- -----<u>제2조</u>----- ----- ----- ----- ----- ----- ----- ----- -----.</p>
<p>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u>점용료등을</u> 전액 감면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p> <p>1. ~ 3. (생략)</p>	<p>② <u>법 제22조제4항</u>----- ----- <u>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u>회계년도</u>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u>연도분</u>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접수 시, 그 이후 <u>연도분</u>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p>	<p>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 -----<u>회계연도</u>----- -----<u>연도 분</u>----- ----- -----<u>연도 분</u>-----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소하천정비법」 <u>제22조제5</u></p>	<p>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u>법 제22조제5항</u></p>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